

□ 政策資料 □

ガス関係法令改正

動力資源部 가스課

動 力資源部는 高圧ガス安全管理法과 가스事業法으로 되어 있는 가스관계법령을 高圧ガス安全管理法, 液化石油ガス(LPG)管理法, 가스事業法으로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가스 関係法律개정(안)을 마련했다.

動資部는 80년 이후 가스需要의 급증과 용품의 복잡·다양화로 가스사고가 빈발, 대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지난 78년에 제정된 現行法으로서는 가스안전관리와 가스의 적정사용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이번에 관계법령을 대폭 개선, 가스안전관리를 확보함과 아울러 가스를 편리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法律개정(안)은 가스공급자, 시공자, 용품제조자 및 가스취급·사용자 중심의 自律管理体制를 확립하고,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유도하여 안전과 사용상 편의를 도모하게 하며, 시설 및 용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의식을 체질화하며, 각종 검사를 전문화·자율화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작성된 것이다.

動資部가 마련한 가스関係법률(안)은 지난 2개월간에 거쳐 学界·業界 및 動資部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스安全管理長期計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4월중法制處 심의에 넘기고, 금년 상반기중에 国회에 제출하여 84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스관계법률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I. 高圧ガス安全管理法(개정)

1. 改正理由

고압가스 사용량의 급증 및 시설·용품의 복잡

다양화추세에 따라 빈발·대형화하는 高圧ガス事故를 현행 검사 및 행정지도의 존형 규제중심의 안전관리체제로서는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自律管理体制를 도입함으로써 高圧ガス취급·사용자 모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소득수준향상에 따라 液化石油ガス(LPG)의 연료용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LPG 사용자가 편리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液化石油ガス事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液化石油ガ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 法에서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액화석유가스 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며, 이 法에서는 液化石油ガ스 이외의 一般高圧ガス와 대형장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스종류별로 법령체계를 조정·개선하려는 것임.

2. 主要內容

(1) 液化石油ガス管理法 및 가스事業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高圧ガ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

(2) 산소, 질소, 아세틸렌의 품질검사제를 폐지함.

(3) “器機”를 “냉동기”로 개칭하며, 특정설비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4) 自律管理

가. 高圧ガス製造者, 충전자, 판매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한 시설에 대하여 高圧ガ스를 공급하도록 하며, 수요자는 供給者の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할 것을 의무화하며, 점검실시에 필요한 人力과 장비를 보유

하도록 함.

나. 高圧ガス製造者, 충전자, 판매자, 사용신고자는 자체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실시기록을 작성, 보존토록 함.

다. 高圧ガス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하며, 제조한 용기, 특정설비(저장탱크)에 대하여도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자체검사결과 불량한 용기, 특정설비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함.

(5) 特定設備의 재검사제를 신설하고,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요건을 규정하여, 판매시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시설은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검사용기, 냉동기, 특정설비는 양도, 임대, 사용할 수 없음을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함.

(6) 容器製造者は 동력자원부장관이 규정하는 容器에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규격표시를 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불량용기제조자에 대하여 회수명령을 할 수 있게 함.

(7) 高圧ガス충전자는 미리 容器의 안전을 점검한 후 안전한 용기에 충전하도록 함.

(8) 高圧ガス사용신고대상자를 “水素, 酸素, 液化암모니아, 液化염소사용자”에서 “아세틸렌사용자”를 추가함.

(9) 가스事故로 인한 타인의 재산과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활용토록 함.

(10) 각종 安全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

(11) 벌칙규정을 조정함.

II. 가스事業法(개정)

1. 改正理由

都市ガス와 性質 및 공급방법이 다른 液化石油가스의 충전업·판매업·집단공급사업 및 가스용품에 대한 관리규정을 이 法에서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液化石油가스管理法에서 규정토록 하며, 液化天然ガ스도입과 더불어 급증될 都市 가스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육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法令의 체계를 조정 개선코자 하는 것임.

2. 主要內容

(1) 가스事業을 도매가스사업과 도시가스사업으로 구분함.

(2) 가스供給者, 사용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정의를 動力資源部令으로 규정토록 함.

(3) 都市ガス보급촉진 또는 都市계획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事業者에게 가스供給区域·지점·주요工程別로 가스공급시설설치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III. 液化石油가스管理法(제정)

1. 制定理由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편리하고 熱量이 높으며, 公害가 없는 液化石油가스(LPG)의 사용이 급증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가스용품도 복잡·대형화하고 있음.

또한 전근대적 流通構造에 의한 공급체제로 인하여 液化石油가스의 정량충전여부에 따른 시비 및 사용상의 불편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검사 및 행정지도의 존형구체 중심의 안전관리체제로서는 液化石油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없으므로 液化石油가스취급자·시공자·용품제조자 및 사용자가 모두 자율적으로 안전관리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시설과 용품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며, 供給体制의 개선으로 소비자가 液化石油가스를 편리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液化石油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이를 위하여 현행 高圧ガス安全管理法 및 가스事業法中 液化石油가스에 관한 규정을 이 法에 통합, 대폭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液化石油가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主要內容

(1) 許可對象

液化石油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液化石油가스판매사업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自律管理

가. 供給者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한 시설에 공급하도록 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도록 의무화하며, 점검실시에 필요한人力과 장비를 보유토록 규정함.

나. 液化石油가스충전사업자·판매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자체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실시기록을 작성, 보존토록 함.

다. 液化石油가스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하며, 제조한 가스용품에 대하여도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자체검사 결과 불량한 용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液化石油가스판매시설은 정기점검사대상에서 제외함.

(4)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저장자는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5) 未檢ガ스용품의 판매금지는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함.

(6) 가스용품제조사는 動力資源部長官이 지정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를 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불량용품에 대하여 회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용품제조사는 용품의 사용용도, 사용방법, 보증기간을 용품에 표시

하여야 하며, 용품사용자는 용품표시내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함.

(7) 충전사업자는 容器에 정량을 충전하고, 容器에 정량표시증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전까지는 누구도 이를 위조·변조·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8) 증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증지가 훼손되었거나 불량용기에 충전된 가스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또는 전물내에는 용기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를 공급할 수 없으며,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함.

(9) 가스事故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활용하도록 함.

(10) 시공자의 자격을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시공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공을 완료한 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시공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11) 집단공급사업자는 공급지역내의 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공급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12) 허가관청은 이 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高圧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한 韓국가스安全公社 또는 겸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3) 가스안전기술의 개발등 안전관리 및 가스유통구조개선의 지원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14) 液化石油가스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일반가정에도 공급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별로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충전소의 대형화) *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큰다.